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4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임용직위	임용직급	선발인원	임용기간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5호)	1명	2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 감사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하기관 감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진정조사
○ 공직기강 확립, 사정·청렴·일상감사(계약심사 포함)에 관한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순찰, 각종 민원사항(진정·방문·전화 등) 처리 및 관리 등

3. 근무상한 연령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규정 적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상한 연령 제한 없음

4.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5. 응시 자격요건

○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

임용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 응시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응시결격사유

1. 우리구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제3자뇌물제공·수뢰후 부정처사)까지,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6. 보수수준

응시구분	임용방법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	전보 등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
민간인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개방형 5호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하한액 53,316천원 상한액 93,801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10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심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6. 11. 20.(금) (홈페이지 게시)	2026 11. 23.(월)~ 11. 26.(목) 중 1일 〔예정〕	동대문구청 지하1층 제2회의실	2026. 11. 27.(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접수기간 : 2026. 11. 17.(화) ~ 11. 19.(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동대문구 5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10,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인증처 :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이력서상의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에 의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①, ②, ③은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④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7매 이내) 및 요약서(A4용지 1매) 각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⑤ 경력증명서(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만 인정됨.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경력사실확인증명서) 제출

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기술함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서명)

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미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1부.

⑩ 상훈,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 제출서류(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 해당여부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내부 응시자만 있을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2127-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